

제 8 장

무역구제

제 1 절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8.1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해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3. 어느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제 2 절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8.2 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

1. 이 협정에 따른 관세의 감축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당사국은 과도기간 동안에만 한해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의 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그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기준 관세율¹⁾

3.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의 수입에 대해 그 출처와 관계없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다.

제 8.3 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기준

1) 양 당사국은 관세율할당이나 수량제한 중 어느 것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로 허용 가능한 방식이 아님을 양해한다.

1. 어느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및 기간을 제외하고,

나.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하여 필요하다는 것과 그 국내 산업이 구조조정 중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제8.4조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2.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그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적용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3.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한 경우, 그 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은 그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을 적용한다.

4. 당사국은 이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료부터, 연장을 포함하여 이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적용기간이 최소 1년이어야 한다.

제 8.4 조

조사절차 및 투명성 요건

1.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의 요건을 준수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4조제2항가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이 조사 개시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러한 모든 조사를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제 8.5 조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관세의 감축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증가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의 예비 판정에 따라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8.2조에 규정된 방식을 취한 모든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기간 동안 제8.2조 및 제8.4조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증가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고 판정되지 않은 때에는,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로부터 발생한 보증이나 수령된 기금은 각 경우에 맞게 신속히 해제되거나 환급된다. 모든 그러한 잠정 양자 긴

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존속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8.6 조 **통지와 협의**

1.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다음을 서면으로 신속히 통지한다.

- 가. 이 절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의 개시
- 나.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그리고
- 다.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는 최종 결정의 채택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자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 보고서의 공개본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자국의 상품이 이 절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의 적용대상이 되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수행하는 당사국은 제1항에 따른 통지나 권한있는 조사당국이 절차와 관련하여 발표한 모든 공고 또는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요청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4.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모든 통지는 영어로 교환된다.

제 8.7 조 **보상**

1.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조치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조치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그 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하기 전에 조치적용 당사국에게 영어로 서면 통지한다.

4.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료일에 소멸된다.

제 8.8 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8.2조제2항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권한있는 조사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페루에 대해서는, 통상본부 또는 그 승계기관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해,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 합계가 그러한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주요 부분

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아니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 날부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기간에 5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제 3 절 반덤핑 및 상계 조치

제 8.9 조 반덤핑 및 상계 조치

1.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조치의 적용에 대해 1994년도 GATT 제 6조,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과 관련된 모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를

하는 동안, 모든 통지문, 수출자/생산자 질의서, 그리고 정보요건²⁾을 영어로 교환하는 것을 합의한다.

3. 당사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관세의 금액은 덤핑 마진 또는 보조금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조사 당사국은 덤핑 마진 또는 보조금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에는 덤핑 마진 또는 보조금 미만의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제1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의 신청 접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관해 자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5.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통지에 더하여, 그리고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통지와 별개로, 그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은 그러한 조사절차의 개시를 수출자/생산자 질의서 사본 및 알려진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과 함께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 통지한다.

6. 제5항에 따라 통지를 접수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가. 30일 이내에 조사 중인 상품의 생산자 및 수출자의 목록을 그 주소와 함께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에게 송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관련 당사자는 권한있는 조사당국이 수출자/생산자 질의서 및 정보요건을 통해 요구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그 권한있는 조사당국의 공식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권한있는 조사당국은 번역사의 신분증명과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한, 그러한 자료와 정보의 번역본을 인정한다.

- 나. 조사 중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관련 무역 또는 산업 협회에게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 다. 질의서에 대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답변을 수집하고, 질의서에 명시된 만기일까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에게 수집된 답변을 송부할 수 있다.

제 8.10 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권한있는 조사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페루에 대해서는, 국립 경쟁 보호 및 지적재산 보호 협회 또는 그 승계기관

제 4 절 무역구제 협력 체계

제 8.11 조 무역구제 협력 체계

1. 정보 및 경험의 공유를 통해 무역구제 사안에 대한 양국 각각의 법, 그 법의 적용 및 무역정책의 일반적인 모든 측면의 더 나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당국 및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설립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양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음과 같은 무역구제 사안에 대해 협력 체계를 통해 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무역구제 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각 당사국의 지식과 이해를 제고하는 것

나.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다. 반덤핑 조사에서의 최소부과원칙 및 제로잉 금지에 대한 규율과 같은 세계무역기구 협상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무역구제와 관련된 다자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리고

라.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해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한 후에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러한 회의 또는 유사한 기회는 반덤핑 조사 개시를 위한 당사국의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